

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37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이병도, 박강산, 박상혁,
박유진, 서상열, 서준오,
성흠제, 이병윤, 이용균,
임만균, 정준호, 최기찬,
허·훈, 황철규 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- 약자동행 정책의 취지와 사업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여 개별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다차원적인 약자개념으로 조례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약자동행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사회이동성 제고와 불평등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을 규정함(안 제1조).

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을 제고하고” 를 “사회이동성을 제고하고 불평등 완화를 통해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약자동행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적극적 배려를 제공하여 약자의 <u>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을 제고하고</u> 사회통합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회이동성을 제고하고 불평등 완화를 통해</u> ----- -----.</p>

문서번호

2023101600000066

비대상 사유서

요청인 : 이병도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6.

회신일 : 2023.10.18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1조(목적) 중 “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을 제고하고”를 “사회이동성을 제고하고 불평등 완화를 통해”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감소나 재정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김지혜
	☎ 02-2180-7953
	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